

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

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6-2번지 일원 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【 주택조합 변경인가 내역 】

조 합 명	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	대 표 자	신○○
사무 소재지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8 우보빌딩 401호		
인 가 일	2020. 1. 3.		
건설예정지	경기도 화도읍 마석우3지구 2블럭 (마석우리 36-2번지 외 48필지)		
조합원수	기존 : 390명 → 변경 : 390명 (탈퇴1, 총원1)		
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면적	23,552 m ²		
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	100% (국공유지 제외)		

2026. 3. 20.

남 양 주 시 장